

의안번호	제 968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옥규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발의자 : 이옥규, 임영은, 박상돈,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
김국기, 원갑희

1. 개정이유

- 법령의 명칭을 약칭을 정의하지 않은 채 약칭을 사용한 것을 전
체법령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전체 법령 명 사용(안 제3조)
 - 법 → 「대한민국국기법」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국기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널 리”를 “널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이 정한 국기게양일”을 “「대한민국 국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한 국기 게양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에서 위임된 태극기의 계양일을 지정하여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국기의 계양일) ① <u>법이</u> 정한 국기계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계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에서 위임된 태극기의 계양일을 지정하여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국기의 계양일) ① 「<u>대한민국국기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한 국기 계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계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대한민국국기법

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
3.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
4.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5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
제12조(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)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약칭에 대한 정의 없이 약칭을 사용하여 법령을 알 수 없게 된 것을 전체 법령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,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